

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(행정안전국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3년도 제1회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0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3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3. 10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

가. 총 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		1회추경 (안)	비 고
	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	718,317	715,594	710,357	5,237	2,723	
일 반 회 계		695,027	692,304	687,067	5,237	2,723	
특 별 회 계		23,290	23,290	23,290	0	0	
	의료급여기금	590	590	590			
	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	592	592	592			
	주 차 장	22,108	22,108	22,108			

나. 일반회계

○ 세입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 (A+B)	기 정 액			1회추경(안) (B)	비고
		소 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695,027	692,304	687,067	301	2,723	
자 체 재 원	162,357	162,357	162,357	-	0	
지 방 세	125,066	125,066	125,066	-	-	
세 외 수 입	37,291	37,291	37,291	-	-	
의 존 재 원	464,455	461,732	456,495	301	2,723	
지방교부세	19,326	19,326	19,261	65	-	
조정교부금등	140,055	140,055	139,823	232	-	
보 조 금	305,074	302,351	297,411	4,940	2,723	
보 전 수 입 등	68,215	68,215	68,215	-	0	
순세계잉여금	68,215	68,215	68,215	-	-	
보조금사용잔액	0	-	-	-	-	

○ 세출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 (A+B)	기 정 액			1회추경(안) (B)	비고
		소계(A)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695,027	692,304	687,067	5,237	2,723	
정 책 사 업	562,131	559,356	554,138	5,218	2,775	
재 무 활 동	11,868	11,868	11,868	-	0	
행정운영경비	121,028	121,080	121,061	19	-52	

4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

가.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1회추경(안)	증감률
총	계	226,336,473	237,666,860	△11,330,387	△4.77 %
민원	감사담당관	255,994	255,994	0	0.00 %
소통	담당관	3,793,650	3,758,650	35,000	0.93 %
행정	안전국	150,108,490	142,832,531	7,275,959	5.09 %
	행정지원과	109,885,759	109,779,319	106,440	0.10 %
	자치행정과	11,351,922	10,840,683	511,239	4.72 %
	교육지원과	24,078,802	17,720,522	6,358,280	35.88 %
	주민안전과	4,024,958	3,724,958	300,000	8.05 %
	민원여권과	767,049	767,049	0	0.00 %
기획	경제국	53,531,915	72,419,261	△18,887,346	△26.08
	기획예산과	30,974,185	53,671,599	△22,697,414	△42.29 %
	지역경제과	14,616,048	10,805,980	3,810,068	35.26 %
	일자리청년과	6,377,742	6,377,742	0	0.00 %
	재무과	464,972	464,972	0	0.00 %
	세무1과	467,531	467,531	0	0.00 %
	세무2과	631,437	631,437	0	0.00 %
보건	소	18,646,424	18,400,424	246,000	1.34 %
	보건정책과	4,049,839	4,049,839	0	0.00 %
	건강증진과	11,401,090	11,401,090	0	0.00 %
	의약과	2,526,205	2,280,205	246,000	10.79 %
	위생과	669,290	669,290	0	0.00 %

나. 행정안전국 부서별 추경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세부사업명	사업개요	최종예산액	기정액	1차 추경(안)
						7,275,959
1	행정지원과	효율적인청사관리	- 종합청사 1층 로비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- 노후 비데 교체 및 설치	2,760,351	2,705,351	55,000
2	행정지원과	해외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	- 국외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및 제반비용	123,040	82,600	40,440
3	행정지원과	부설주차장관리	- 종합복지관 셔틀버스(전기버스) 충전설비 설치 관련 설계 용역비	43,620	32,620	11,000
4	자치행정과	동주민센터기능보강	-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풍수해 대비 시설 보강	719,077	629,077	90,000
5	자치행정과	주민자치활성화사업지원	- 주민자치회 성과평가 연구용역비	309,360	259,360	50,000
6	자치행정과	자치회관운영	- 자치회관 내 체력단련실 노후장비 교체	1,445,690	1,381,690	64,000
7	자치행정과	생활안전CCTV설치	- CCTV설치 구비분	200,000	-	200,000
8	자치행정과	금천형협치제도운영	- 협치회의 운영비 민·관 협력사업 종합관리 추진인력 인건비 등	90,759	-	90,759
9	자치행정과	마을공간활성화지원	- 독산1동 마을활력소 시설보강	243,014	226,534	16,480
10	교육지원과	금천미래장학회운영지원	- 금천구 우수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재단 운영 재원 확보	1,000,000	-	1,000,000
11	교육지원과	(가칭)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	- (가칭)금천 국제 외국어 센터 부지 매입비	5,278,300	-	5,278,300

연번	부서명	세부사업명	사업개요	최종예산액	기정액	1차 추경(안)
12	교육지원과	나래품 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운영	- 나래품 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, 프로그램 운영비 등	181,070	101,090	79,980
13	주민안전과	U-통합센터 CCTV 시스템 운영	- 통합플랫폼 구축 구비분	1,167,350	867,350	300,000

5. 검토의견

행정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

-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13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예산에서 72억 7,59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-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
 - 행정지원과는 종합청사 1층 로비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4,000만원 증액, 전기버스 충전설비 설치 관련 설계용역비 1,100만원 증액, 국외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4,020만원 증액 편성
 - 자치행정과는 동 주민센터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등으로 7,800만원 증액, 행정차량 교체 구매로 1,200만원 증액, 주민 자치회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5,000만원 증액, 자치회관 내 체력 단련실 노후장비 교체로 6,400만원 증액, 지능형 CCTV 설치비로 2억 증액, 협치지원관 인건비 및 협치회의 운영비 등 9,075만 9천원 증액, 독산1동 마을활력소 시설보강비 1,648만원 증액 편성
 - 교육지원과는 금천미래장학회 출연금으로 10억 증액, 가칭 금천 국제외국어센터 부지매입비 등으로 52억 7,830만원 증액,

나래봄 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7,998만원 증액 편성

- 주민안전과는 U-통합운영센터 스마트시티 안전망 구축비로 3억 증액 하였음

○ 행정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은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과 생활안전 CCTV 설치, 가칭 금천 국제 외국어 센터 부지 매입비, 미래장학회 출연금 등의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막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 것으로 판단됨.

○ 이번 추경에서 확정 증액 편성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각종 계약 시 지방계약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, 과다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내실있는 예산 집행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관련 법령 1부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 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 8. 4.]